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징 계 · 시정 요구

제 목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아산시

징 계 대 상 자 ① 충청남도 아산시 ○○○○과 지방○○○○○ ○○○
(전 아산시 ○○○○과)

② 충청남도 ○○○○실 ○○○○○○관 지방○○○○○ ○○○
(전 아산시 ○○○○과)

징 계 의 종 류 ①중징계, ②경징계

훈 계 대 상 자 충청남도 아산시 ○○○○과 지방○○○○○ ○○○
(전 아산시 ○○○○과)

내 용

지방○○○○○ ○○○은 2015. 7. 21.부터 2016. 7. 12.까지, 지방○○○○○
○○○는 2015. 7. 21.부터 2017. 7. 9.까지, 지방○○○○○ ○○○은 2015. 1. 2.
부터 2017. 7. 9.까지 충청남도 아산시 ○○○○과에서 각각 아산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노면청소 대행용역의 감독책임자, 실무책임자,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충청남도 아산시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2개 구역에 대해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등 가로청소 용역을
아래 [표1]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1] 아산시 폐기물 수집 운반 계약 현황

구분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부서
2014 년도	201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주)○○○○	2014.1.1.~ 2015.12.31	8,753,872천원	수의	○○○○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주)	2014.1.1.~ 2015.12.31	5,295,756천원	수의	○○○○과
	음식물류 처리 대행	(주)○○○○	2014.1.1.~ 2015.12.31	132,080원/톤	수의	○○○○과
	음식물류 처리 대행	(주)○○	2014.1.1.~ 2015.12.31	132,080원/톤	수의	○○○○과
2016 년도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주)○○○○	2016.1.1.~ 2016.12.31	4,605,043천원	수의	○○○○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주)	2016.1.1.~ 2016.12.31	2,749,706천원	수의	○○○○과
	음식물류 처리 대행	(주)○○○○	2016.1.1.~ 2016.12.31	125,870원/톤	수의	○○○○과
	음식물류 처리 대행	(주)○○	2016.1.1.~ 2016.12.31	125,870원/톤	수의	○○○○과
2017 년도	2017년 생활폐기물[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노면청소 대행	(주)○○	2017.1.1.~ 2017.12.31.	3,139,990천원 (변경) 3,160,961천원	협상	○○○○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주)○○○○	2017.1.1.~ 2017.12.31.	4,527,245천원 (변경) 4,637,136천원	입찰	○○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주)	2017.1.1.~ 2017.12.31.	3,092,136천원	입찰	○○과
	음식물류 처리 대행 계약	(주)○○○○ (주)○○	2017.1.1.~ 2017.12.31.	110,100원/톤	입찰	○○과

1. 무면허 업체나 개인이 참가 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 등” 대행 업자에게 용역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 관서(○○○○과)에서는 ‘아산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대형 폐기물)수집·운반 및 가로·노면청소 대행 용역(이하 “아산시 생활폐기물 용역”이라고 한다.)’ 입찰 공고 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 등”의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과)에서는 2016. 5. 20. 홈페이지에 ‘아산시 생활폐기물 용역’ 공고 시 참가자격을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 등을 참가하도록 공고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2]와 같이 무면허 업체나 개인이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입찰 공고한 사실이 있다.

[표2]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노면청소 대행 참가자격(공고문)

○ 다음 “가” 내지 “라”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공고일 현재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아산시에 주소등록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개인, 법인)로서 사업설명회 참가한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
라. 공고일 현재 아산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법인이나 임직원은 참가를 할 수 없음.

그 후 2016. 8. 8. 무면허 업체인 (주)○○(대표 ○○○, 계약금액 3,139백만원)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2. 부당하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위 관서(○○○○과)에서는 무면허 업체나 개인이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정하여 입찰 공고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 등”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 등록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여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 면허업체와 개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가로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을 부당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따르면,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예시: 단순노무용역 등)를 주의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동 용역의 계약체결방법 등에 대한 검토 시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하여 하며, 가로청소 용역 등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협상의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체결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관서(○○○○과)에서는 가로청소 용역 등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협상의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체결을 할 수 없음에도 2016. 8. 8. 시민생활편익과 밀접성, 연중 계속성,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한다는 사유로 단순 노무용

역인 가로청소 용역 등을 부당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였다.

3.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제4절 1.(위원회 구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고,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동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할 경우에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하고,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과)에서는 상기 용역의 평가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예비위원 구성명단과 평가위원에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를 포함하지 않고 부당하게 해당분야의 교수만으로 평가위원을 선발하여 평가한 사실이 있다.

4. 재무관 권한이 없는 자가 계약

「아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 구매의 계약업무는 아산시청 본청 재무관이 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12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92호 서식)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93호 서식) 또는 물품계약대장(별지 제94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 구매의 계약업무는 아산시청 본청 ○○관이 행하도록 의뢰하여 계약 업무를 추진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산시 생활폐기물 용역’사업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3,139백만원이므로 본청 ○○관에게 계약 의뢰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신규 업체 면허를 허가한다는 사유로 부당하게 ○○관 권한이 없는 ○○○○과에서 직접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등 부적절하게 권한이 없는 자가 계약업무를 처리

한 사실이 있다.

5. 원가계산 용역 부적정으로 예산낭비

위 관서에서는 2016. 2. 1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까지 등 가로노면청소 대행 원가계산 용역을 (재)○○○○○○○○원과 계약 체결(계약액 17백만원)하여 2016. 2. 25.부터 2016. 6. 22까지 폐기물을 성상별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하여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따라 폐기물을 성상별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운용하여야 했다..

그런데 ‘아산시 생활폐기물 용역’의 계약상대자인 (주)○○(대표 ○○○)에서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2017. 1. 1.부터 4. 30.까지 폐기물을 성상별로 구분하여 처리를 하지 못하고 구역별로 처리하는 등 계약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폐기물대란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공무원 2개 팀(1개 팀당 3명)을 구성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2017. 5. 1. 성상별로 구분하여 처리하기 위해 원가 용역을 추진하였음에도 용역업체에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용역업체의 구역별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부당하게 구역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해 줌으로서 당초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거하기 위해 원가계산 등에 투입된 용역비 7백만원(50% 이상) 상당 예산을 낭비하고, 폐기물 대란으로 행정력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6.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제안서 평가위원 미 제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제4절 1.(위원회 구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들의 보안각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들의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사전·사후 뇌물수수 등 사전에 관련 교육을 시켜야 하고,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과)에서는 평가위원을 선정 후 “이유여하를 막론

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 받지 않겠습니다.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보안각서를 제출 받았음에도

2017. 6월경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는 부당하게 평가 후 업체로부터 각각 500만원¹⁾을 수수하고 3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위 관서(○○○○과)에서는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폐기물관리법」만 검토하고 아산시 의회에 보고했다는 사유로 「지방계약법」에 따른 평가위원 제재 검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7. 선정업체와 사전 정보 교환 등 원가계산서 유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모든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과)에서는 부서장인 ○○○이 검찰의 처분결과(무혐의: 증거불충분)를 살펴보면, ‘아산시 생활폐기물 용역’ 사업 선정기간에 선

1) ○○○○법원 ○○지원 ○○○○○○○○○○

정업체인 (주)○○ 대표이사 ○○○와 통화내용, 문자송신 내용, 동 사업 기간 동안 ○○○와 부적절한 접촉, 또한 이 사건을 포함한 아산시 사업과 관련한 문자 송수신 내역, 사전 원가계산서 유출 등이 확인되었음에도,

위 관서(○○○○과)에서는 매일 현장출장을 나가고,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유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공무원의 조사 등에 대한 해당업무를 방치하는 등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등을 위반한 공무원들에게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에 신뢰를 실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와 같이 무면허 업체나 개인이 참가 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입찰공고, 가로청소 용역 등 단순노무용역을 부당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부적정, 재무관 권한이 없는 자가 계약, 원가계산 용역 부적정으로 예산낭비,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제안서 평가위원 미 제재, 선정업체와 사전 정보 교환 등 원가계산서 유출 관련 정보교환 등 공무원으로써 부적절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1조, 제53조,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충청남도 아산시 ○○○○○과(전 아산시 ○○○○○과) 지방○○○○○ ○○○은 2015년도 지방공무원 공개 채용시험 관리 부적정 처분요구와 병합되어 있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아산시장은**

[징계] 위 관련자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

○○○과 지방○○○○ ○○○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들 중 지방○○○○○ ○○○은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평가위원에게 뇌물수수하고 선정된 업체에게 계약해지 및 업체 제재, 평가위원 제재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무면허 업체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재무관 권한이 없는 자가 계약체결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